

#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7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7년 7월 16일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)

### □ 제안이유

-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태풍·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,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천시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가. 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,

단장은 단원이 선출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함.

(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

나.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

하고, 동방재단의 대표는 소속단원이 선출하도록 함.(안 제3조제4항 및

제5항)

다.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,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함.(안 제3조제7항 및 제8항)

라. 단장과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, 단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
마.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의장은 단장이 맡도록 함.(안 제7조)

바.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응,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활동대상으로 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함.(안 제8조)

사.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
아. 단장은 매년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0조)

자. 단장을 포함한 단원은 연 2회 8시간 및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규정함.(안 제13조 및 제14조)

차. 단장은 지원액의 사용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.

(안 제16조)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방재단 구성중 일반조직 및 전문조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?	○ 일반조직은 순수한 봉사단체 요원이며 전문조직은 소방, 전기, 가스 등 전문적인 기술자격을 갖춘 주민으로 구성토록 하겠음
○ 방재단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	○ 방재단원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연2회 8시간 1회 4시간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으며, 자긍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 하도록 조치하겠음
○ 재난재해시 소방방재청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되어 있는지 단장의 역할은?	○ 단장은 시장이며, 재난발생시 시장의 지시에 의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소방방재청과 연계되어 있음
○ 각동별 방재단을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동에는 어떠한 단체가 적정한가?	○ 8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파주시와 강릉시를 벤치마킹 했는데 각동에는 통장 단으로 구성하여 잘 운영하고 있음 우리시도 참고하여 방재단을 구성하겠음.
○ 단장 및 부단장은 유급제인가?	○ 단장 및 부단장 간사는 봉사직으로 무급 제임.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#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제130호
의결년월일	2007. 7. 19 (제137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6. 29.

제출자 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태풍·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,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천시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가. 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, 단장은 단원이 선출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함.(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

나.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동방재단의 대표는 소속단원이 선출하도록 함.(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)

다.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,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함.(안 제3조제7항 및 제8항)

- 라. 단장과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, 단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- 마.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자율 방재협의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의장은 단장이 맡도록 함.(안 제7조)
- 바.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응,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활동대상으로 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함.(안 제8조)
- 사.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- 아. 단장은 매년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0조)
- 자. 단장을 포함한 단원은 연 2회 8시간 및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규정함.(안 제13조 및 제14조)
- 차. 단장은 지원액의 사용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.  
(안 제16조)

##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천시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 부천시자율방재단(이하 "시방재단"이라 한다)은 부천시에 설치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시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시방재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,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부단장 및 간사는 시방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

④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(이하 "동방재단"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

⑤ 동방재단의 대표는(이하 "대표"라 한다) 해당 방재단의 소속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⑥ 동방재단원은 시방재단원이 되며,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.

⑦ 단원(동방재단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개인단원 및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,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방재단(동방재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.

⑨ 단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 및 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다만,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제4조(직무)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.

② 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
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와 회의록 작성, 그 밖에 방재단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임기) 단장과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단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해임) 단장은 부단장, 간사, 대표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.

1.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

2. 부천시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5.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

제7조(자율방재협의회)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, 재난지역에 대한

지원대책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자율방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협의회 의장은 단장이 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동방재단 대표,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, 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인으로 구성한다.

④ 협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, 필요 시에는 인력·장비·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임무)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활동대상으로 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을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한다.

③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재단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
2.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
3.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에 대한 홍보
4. 재난 관련 교육·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·훈련 실시
5. 비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, 경보전달,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



6.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,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

7. 재난지역의 전기, 통신, 상·하수도 등의 응급복구

8.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

9. 인력, 장비, 물품 등의 수요 파악

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시기·범위·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.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.

제9조(소집) ①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소집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,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③ 단원은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 다만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운영 등)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,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에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할 수 있다. 다만, 합동근무의 시기, 인원,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⑥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시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 시에는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식비, 여비, 유류구입비 등 필수경비
2.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단원의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. 다만,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3. 제복, 모자,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
4.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
5. 단원의 교육·훈련 참가비용,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비용
6.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

7.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

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금지행위)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4.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
제12조(출입증)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.

제13조(교육) 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단장, 부단장, 간사, 대표 및 단원은 연간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단장은 연간교육 중에서 1회 4시간 이상을 전문기관(민간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.

제14조(훈련) ① 훈련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중앙지원단 자문)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·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의 위원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감독)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」는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위 축 장

주 소:

성 명:

귀하를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「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부천시자율방재단의 단장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부 천 시 장 (직인)











[별지 제4호서식]
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				
등록 번호	성 명	활 동 상 황		비 고
		횃 수	시 간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「주」 작성시 유의사항

1. 등록번호: 개인은 별지 제2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, 단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함.(예, 10-1)
2. 횃수 및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하고,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 또는 EXCEL 등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.
3.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.

[별지 제5호서식]

‘○○년도 연중 활동계획서		
〈부천시자율방재단〉		
월별	주요내용	비고
1	○ ○	
2	○ ○	
3	○ ○	
4	○ ○	
5	○ ○	
6	○ ○	
7	○ ○	
8	○ ○	
9	○ ○	
10	○ ○	
11	○ ○	
12	○ ○	

「주」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하고 부천시안전관리계획과 연계 작성

[별지 제6호서식]

# 출입증

출입증

사 진  
3×4

부천시자율방재단원

5.5cm

부천시자율방재단원증

NO. 00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혈액형 (RH+)형

성 명 : 홍 길 동

주민번호 : 123456-\*\*\*\*\*

소 속 : [블루박스]

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200 . . .

부 천 시 장

7.7cm

5.5cm